2020학년도 유치원 안전계획

배곧초록유치원

Ⅰ. 개요

1 법적 근거

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나. 유아교육법 제17조, 제 21조 2항

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지역계획 수립), 제6조(학교계획 수립), 제7조(평가)

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 7조(교육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마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유치원안전교육)

바 교육부 2016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2015.11.),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사 2020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2019. 12.)

2 유치원 안전계획

가. 유치원 안전계획의 목표

○ 실효성 있는 유치원 안전계획의 수립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 유치원 안전 관리의 체계성(계획, 준비, 실행, 평가, 피드백) 확보

나. 비전과 목적

비전	365일 안전한 유치원! 행복한 유아!
목표	유아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유치원 실현
중점사업	체험으로 만드는 안전교육 유아의 꿈과 행복을 만드는 안전한 유치원

3 유치원 현황 및 조직체계

가. 학교 현황

1) 일반현황

유치원명	배곧초록유치원	설립구분	공립
주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8-11 배곧초록유치원		
전화	031-364-6100	FAX	031-6196
홈페이지	http://bggreen.kg.kr/		
원장	○○○	유치원 안전책임관	○○○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

2020. 03. 11. 현재

구분 \ 반	기본과정				방과후 과정			계
	만3세 (5학급)	만4세 (5학급)	만5세 (3학급)	특수 (1학급)	만3세 (2학급)	만4세 (2학급)	만5세 (2학급)	
남	37	48	35	(2)	17	21	18	120
여	42	44	34	(1)	15	21	15	120
계	79	92	69	(3)	32	42	33	240

직위	원장	원감	교사	방과후 교사	교무 행정 실무사	특수 실무사	행정 실장	행정 계장	행정 주무관	영양사	조리사 조리 실무사	청소 위생사	계
인원수	1	1	16	6	1	1	1	1	1	1	2	1	33

3) 유치원 비상연락망

교직원 비상 연락망

작성

원장실	031-364-6101
원감실	031-364-6102
행정실	031-364-6181
교무실	031-364-6100
급식실	031-364-6185

원장/○○○		행정실팩스	031-364-6197
원감/○○○		교무실팩스	031-364-6196
행정실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8-11 (우) 15012			

* 전화번호는 핸드폰번호입니다.

일자 2020.03.05.

열매	꽃잎	새싹	방과후	특수	행정실	급식실
열매1반 ○○○	꽃잎1반 ○○○	새싹1반 ○○○	방과후 ○○○	특수 ○○○	계장 ○○○	영양사 ○○○
열매2반 ○○○	꽃잎2반 ○○○	새싹2반 ○○○	방과후 ○○○	특수지도사 ○○○	주무관 ○○○	조리사 ○○○
열매3반 ○○○	꽃잎3반 ○○○	새싹3반 ○○○	방과후 ○○○		행정실무사 ○○○	조리실무사 ○○○
	꽃잎4반 ○○○	새싹4반 ○○○	방과후 ○○○			
	꽃잎5반 ○○○	새싹5반 ○○○	방과후 ○○○			
			방과후 ○○○			

원장	원감	교무	연구	열매	꽃잎	새싹	방과후	특수	교원소계	행정	공무직	영양조리	행정소계	총원
1	1	1	1	3	5	5	6	1	24	3	3	3	9	33

4) 유치원 위치 및 비상대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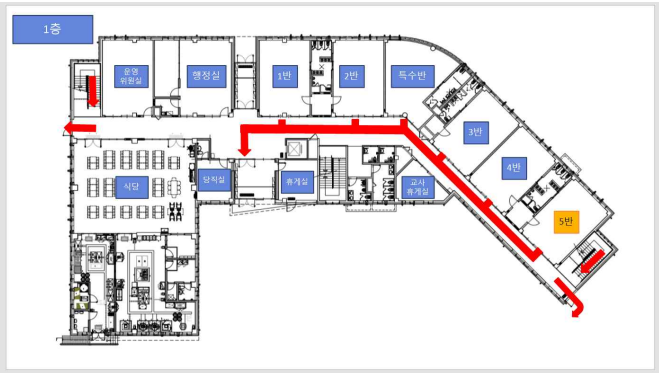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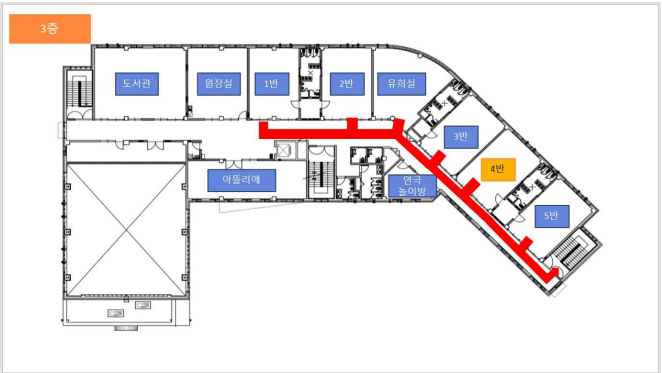

Ⅱ. 세부 추진계획

1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가. 학교 안전관리 추진 조직

1) 비상대책반 구성·운영(감염병 대책기구와 일원화)

대책반장 : 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 주재
- 사안논의 및 처리안결정
- 유치원운영위원장 사고통지 및 협조 요청(5분이내)

유치원안전책임관: 원감

대책 부반장: 원감

- 상황실 운영
  - 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대책반 팀 구성 및 역할배정
- 대내외 언론 대응

유관기관 협조

- 유치원관할지구대
- 시흥소방서
- 유치원지정의료기관
  - 관할 병원 지정 후 가정통신문 통해 (조)부모에 사전공지

	현장대응반	교내지원반	행정지원반	외부지원반
	• 교무부장 • 안전부장 • 안전담당교사 • 담임교사	• 연구부장 • 학년부장 • 방과후과정 교사	• 행정실장 • 행정주무관 • 행정주무관	• 교육지원청 • 유치원운영위원회
재난안전	-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 보호자 연락 - 최초 사안조사 및 정보 수집 - 일지 및 사안보고서 작성	-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 직원회의 개최 - 유아현황 파악 - 심리상담 - 학사일정 검토, 관련 문서 작성	- 유아 귀교 대책 수립 -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 - 피해현황 파악 - 유치원운영위원회 협조체계 구축	- 자문, 지원
감염병	-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 환자파악 및 처치, 진료의뢰 -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 역학조사의뢰 - 등교중지유아관리 - 유아, 학부모교육	- 상황판 작성 - 수업결손대책 수립 - 등교중지 유아의 출결사항 확인 및 가정학습관리	- 방역활동, 위생시설 관리 - 예산 및 행정지원 - 대내외 홍보 - 대책반 업무지원	- 자문, 지원

2) 재난 및 안전사고 표준대응 절차 및 구성원 임무

사전 위기 관리

- 상황시스템 가입 및 점검
- 유관기관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성
- 상황별 행동대처 방법 세분화
- 상황별 대처요령 및 업무매뉴얼 숙지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활용
- 교육·체험활동 시간 활용 안전교육 실시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대응	상 황	유치원 상황대응
사 전 위 기 관 리	**체제정비** 유치원사고 대책반 업무분장 **교육 및 훈련** 사고인식 및 대응능력강화 교원 대응능력 강화 점검 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	- 상황시스템 가입 및 점검 - 유관기관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성 - 상황별 행동대처 방법 세분화 - 상황별 대처요령 및 업무매뉴얼 숙지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교육.체험활동 시간 활용 안전교육 실시 - 안전업무 담당자 전문성 신장 연수

발생시 위 기 관 리 1단계

사고발생

상황전파시스템가동

일일구이구조삼보고

1. 119 (5W1H)
2. 구조 및 구호
3. 보고

※ 화재 등은 소리를 질러 먼저 알려야 함
※ 현장 보존

국민안전처 상황전파 시스템(DB) ⇢ (정보연계) ⇠ 경기도교육청 상황실 ⇢ (정보연계) ⇠ 00교육지원청 상황실

원 장

1. 사고대책반 소집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결정→해결방안 지시
2. 유치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통지, 협조 요청

원 감

1. 사고대책반 운영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확한 정보 종합 및 분석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교육청 보고 (상황전파시스템)
2.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논의

발생시 위 기 관 리 2단계

현장 대응반	교내 지원반	행정 지원반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보호자 연락 -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수집(현장방문) -일지 작성 -사안보고서 작성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직원회의 개최 -유아현황 파악 -학사일정 검토 -관련 문서 작성	-유아 귀원 대책 수립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 -피해현황 파악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회)협조체계구축
⇩	⇩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유아 관리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학부모 지원 요청 -긴급 상황 시 SNS발송 -가정통신문 발송 -피해 유아 및 가족 지원 -상담 계획 수립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행.재정 지원 대책 마련

⇩

복 구

유치원 정상화 (사고종결 및 후속대책 수립)
- 사고관련 안전교육 (예방 및 훈련)

"**사고대응 일이삼**"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 시 교직원 등은 가장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관리자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3) 재난대응 관련 세부업무

직 책		임 무	비 고
최 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5W1H 는 육하원칙을 의미
대책반장	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유치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부반장	원감	- 유치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대응반	○○○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 학년 관리(유아의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피해학생 후송병원별 유아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담임교사 방과후교사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응급 유아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유치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유아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지원반	○○○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유아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학사일정 검토	
	○○○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관련 문서 작성	
	○○○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유아 상담지원 (필요 시 외부지원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지원반	행정실장 ○○○ 주무관 ○○○ 주무관 ○○○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지원	협력지원 단체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유치원운영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4) 유관기관 협조체계

1) 학교안전은 학교 이외의 유관기관, 지역사회, 학부모의 협조.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함

2)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훈련, 사고구조, 사고복구 등 일련의 학교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유관기간	주소	전화번호
시흥교육지원청		031-488-2465
시흥경찰서		031-310-9153
시흥보건소		031-310-5830
시흥소방서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031-310-0502
시흥119안전센터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031-310-0501
119구조대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031-310-0451
경찰민원	시흥시 황고개로 513	콜센터 182
시흥시화병원	경기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	031-432-2600

☞**재난상황 보고요령**

자연재난(풍수해, 설해, 한파, 지진, 폭염등), 화재,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사고 구호조치 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유선보고

유、초、중、고 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방재담당/당직실)		도교육청(남부청사)
			➡	- 주간(평일): 학교안전기획과 : 249-0683~4 (Fax 253-0035)
직속기관				- 야간 · 공휴일: 당직실 : 249-0342 (Fax 249-0362)

2)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관련 세부업무

1) 응급구조체계 조직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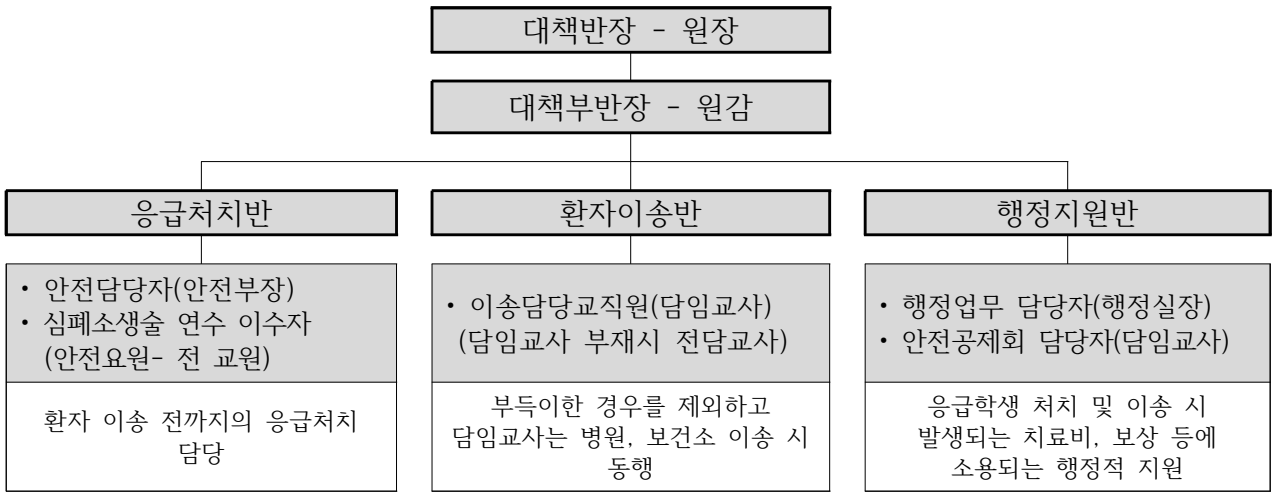

2) 담당자별 세부업무

구분		위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증상일 경우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비고
상황		의식장애, 호흡곤란, 약한맥박, 심정지, 대출혈,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순외상, 단순골절, 고열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업무 분담	최초발견자	• 접근 가능한 교사에게 보고하도록 조치 • 안전담당자 및 응급구조팀이 올 때까지 현장관리		
	원장	• 응급사고 관리 전반에 대해 총괄 •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원감	• 상황파악 및 지시 • 이송 후 보고 받은 최종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 • 유치원 내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배정		
	안전담당자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병원 이송 시 동행(담임)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학생 처치 결과 학부모 상담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안전담당자, 교무기획부장
	담임교사	• 학부모 연락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환자 병원 이송 시 동행 • 치료 후 학부모에게 보상 안내	• 학부모 연락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 안내 및 조치(의료기관 선택은 학부모 의사에 따름) • 학부모에게 인계 • 필요시 병원 이송 동행 •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송자 지정(일차적으로 담임교사가 이송) • 담임교사가 수업중이거나 부재 시 이송담당 및 원감이 이송토록 고려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치료 후 학부모에게 보상 안내	
	교무기획 및 안전부장	• 질서 및 생활지도 • 수업 결손 방지 지원		교무기획 및 안전부장
	이송담당	• 연락 받은 즉시 응급이송차량 준비 •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 • 응급처치자는 차량운전하지 않도록 함		이송:주무관 응급처치자: 담임교사, 원감
	행정담당	• 추후 보상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 • 병원 이송교사 등의 출장처리와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및 공제 급여 청구		행정실장 안전담당자
	기타	• 응급사고 기록지 작성: • 병원 이송을 위해 보호자가 자녀를 데리러 유치원에 오지 못할 경우 교직원이 보호자와 협의 후 직접 이송할 수 있음 • 병원 이송교사는 사전 출장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두 보호 후 사후에 출장 결재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가. 목적

1)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 의식의 조기 체질화·생활화를 도모한다.
2) 사전에 철저한 예방 지도를 통하여 각종 위험을 줄이고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유지하고자 한다.
3) 유아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태도, 기술의 형성을 돕고자 한다.
4) 건강의 토대가 되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형성하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 유아들의 잠재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한다.
5) 유치원 내 감염병 이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사후 조치를 신속히 함으로써 유행 확산을 방지한다.

나. 방침

1) 안전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6-90호),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7대 안전교육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연 1회 안전주간의 날(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 및 연간 안전교육 51시간 이상,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3) 유아의 일상생활과 놀이 및 체험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4) 유치원 안전교육이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안전의식이 생활화 되도록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연수를 강화한다.
6) 자연재난, 고농도 미세먼지, 감염병 등으로부터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건강보호를 위해 조기전파 및 차단·통제를 통한 학교 기능 유지를 위한 학교 비상대책반을 구성한다.
7) 감염병 예방관리 조직은 학교 비상대책반(재난안전)과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다. 추진계획

구분	실천내용	대상	시기
안전교육 및 안전 체험활동	연중 생활주제별 관련 안전 교육 과정 계획·운영 -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표준 51차시 이상 운영) - 전문강사 초빙 및 체험활동 실시 - 화재대피훈련(연 4회 실시) - 지진대피훈련(재난대응안전훈련예방교육) 모두가 함께 하는 나·침·판 5분 안전교육 실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안전관리-특수교육보조인력 활동으로 유아 이동 및 교육활동 안전지원 등	유아	연중
교직원 안전교육	각종 안전 관련 연수 참여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3년이내 15시간 이상) 연수 참여 유치원 행사, 현장학습 관련 사전 안전교육 및 협의 유치원 비상대책반 구성(감염병 대책기구와 일원화)	교사	연중

구분	실천내용	대상	시기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	유치원 아동학대 Zero화 추진 -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유치원 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노력 유치원 안전관리 및 점검 철저 -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운영	교사 학부모	연중
가정과 연계	안전교육 영역별로 부모교육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교육활동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학부모	월 1회 연 1회 연 1회

라. 세부추진계획

1) 안전교육 및 안전 체험활동 계획

가) 연간 안전교육 계획

시기	주	안전교육 영역	활동명	교육시수
4월	1	생활안전	교실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요. 복도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2/9차시
	2	폭력 및 신변 안전	친구가 싫어해요.	1/8차시
	3	교통안전	안전하게 등 · 하원해요.	1/10차시
	4	재난안전	황사와 미세먼지는 위험해요.	1/6차시
5월	1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몸에 해로운 약물이 들어있는 음료수가 있어요.	1/10차시
	2	폭력 및 신변안전	내 마음을 표현해요(아동학대 예방)	2/8차시
	3	생활안전(실종 ·유괴예방)	아무나 따라가면 안돼요.	1/10차시
	4	재난대비	화재대피 및 소방훈련에 대해 알아보아요.	1/6차시
6월	1	폭력 및 신변안전	나의 몸과 마음	3/8차시
	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담배는 나빠요.	2/10차시
	3	직업안전	안전한 작업 행복한 일상 (부모님의 일터 안전하게 가꾸기)	1/2차시
	4	생활안전(실종·유괴예방)	아동안전지킴이집 우리동네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찾아봐요.	3/10차시
7월	1	응급처치	동물에게 물렸어요.	1/2차시
	2	교통안전	비가 오는 날 안전하게 걸어요.	2/10차시
	3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제대로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	3/10차시
	4	재난안전	폭염시 행동요령	2/6차시
8월	3	생활안전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3/9차시
	4	교통안전	안전하게 길을 건너요.	3/10차시
9월	1	생활안전(실종·유괴예방)	'미아방지송' 안전송 (실종유괴)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해요	5/10차시
	2	생활안전	안전하게 물놀이를 해요.	4/9차시
	3	폭력 및 신변안전	내 몸은 소중해(성폭력 예방)	4/8차시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함부로 먹지 않아요	4/10차시

시기	주	안전교육 영역	활동명	교육시수
10월	1	교통안전	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4/10차시
	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술은 해로워요.	5/10차시
	3	생활안전(실종·유괴예방)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양(실종유괴) 미아방지 예방교육	7/10차시
	4	생활안전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놀이해요.	5/9차시
11월	1	폭력 및 신변안전	바른 말, 고은 말을 사용해요.	5/8차시
	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부모님이 주신 약만 먹어요. 약을 먹을 때는 처방전대로 약을 먹어요.	7/10차시
	3	재난안전대비	땅이 흔들려요!	3/6차시
	4	생활안전(실종·유괴예방)	빨간 모자가 되어요.(위험할 때 안전지킴이 집을 찾아요) 부모님, 선생님께 말해요.	9/10차시
12월	1	생활안전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6/9차시
	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은 위험해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올바른 습관을 가져요.	9/10차시
	3	응급처치	응급처치	2/2차시
	4	폭력 및 신변안전	미운 오리새끼(자살예방 애니메이션)	6/8차시
	5	생활안전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해요. 겨울철 안전하게 놀이해요.	9/9차시
1월	1	직업안전	일터의 안전시설을 알아보아요.	2/2차시
	2	생활안전(실종·유괴예방)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해요.	10/10차시

나) 연간 안전 체험활동 계획

월	안전교육 영역	체험활동	관련 기관	교육일	시수
5	교통안전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안전공단	5월 6,7,8일 예정	10/10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성폭력예방 초청공연 감상	갯골극단	5월 14일	7/8
6	교통안전	찾아오는 교통안전교육	국토교통부	6월 11일	10/10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아동권리교육	굿네이버스	6월 19,22,23일	8/8
8	약물오남용	약물오남용교육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8월 28일	9/10
10	재난안전	119소방안전체험	부천 소방서	10월 7일	8/9
11	생활안전	눈건강교실	한국실명예방재단	11월 24, 25일 예정	9/9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대처교육	스마트쉼센타	11월12,13,23일	10/10

다) 재난안전 훈련 및 교육

구분	주요내용	관련 기관	시기	비고
안전점검의 날	안전교육, 교육시설 정기점검 등	자체운영	매월 4일	
방재의 날	방재의식 고취 홍보·교육	국민재난안전포털	5월 25일	재난안전 주간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종합훈련	국민재난안전포털	연 1회 (5월 또는 10월)	
소방훈련 및 교육	화재대피 및 소방훈련 (안전하게 대피해요.)	자체 운영	4월 28일	기록 2년 보관
	재난대피 훈련	자체운영	6월 2일	
	지진대피 훈련	자체운영	9월 15일	
	화재대피 훈련 (소화·화재통보·피난 등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시흥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10월 14일	

라) 연간 안전수업 시수

구분	안전교육 영역								운영 시간
7대 안전교육	생활 안전 교육 (13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10시간)	재난 안전 교육 (6시간)	직업 안전 교육 (2시간)	응급처치 교육 (2시간)	51차시
	기타 (9시간)	실종 유괴 (4시간)							
아동안전 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10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8시간)	감염병 및 약물오용·남용 등 보건 위생관리교육 (10시간)	재난안전 교육 (6시간)			44시간
배곧초록 유치원 운영시간	9시간	10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9시간	2시간	2시간	60시간

마) 나·침·반(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안전교육 계획

대상	내용	시기	방법
교사	나·침·반 안전교육 연수	3월	나·침·반 안전교육자료 활용방법 안내
유아	월: 생활 안전 화: 교통 안전 수: 재난 안전 목: 건강·보건 안전 금: 폭력예방·신변 안전/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 교육청 제공 나침반 안전교육자료 활용	연중	- 매일 5분 자투리 시간을 활용 - 요일별로 주제를 정하여 교육 - 동일 주제를 심화·반복 학습
가정	- 가정연계 교육자료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탑재	연중	나침판 5분 안전교육 탑재

2) 2020년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가)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2020년 이수예정)

구분	총 교직원 수(명)			교원 및 직원		계약제 교직원		이수비율	
	교원 및 직원	계약제 교직원	계(A)	안전관련 전문교육 (15시간) 이수	안전관련 전문교육 (15시간)이수 대상 예정자	1년 4시간 이상 이수	1년 4시간 이상 예정자	계(B)	이수율 (B/A) ×100
계	25	8	33	10	15	2	6	12	36.7

나)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2020년 이수예정)

구분	총 교직원 수(명)			교육 이수 대상 예정자			
	교원	직원	계(A)	교원	직원	계(B)	이수율 (B/A)×100
계	18	15	33	18	15	33	100

다) 교직원 연간 안전교육 계획

월	영역	안전교육내용	시기	교육형태
3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 전달연수	3월 11일	교사 자체 연수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교사 자체 연수
4	정보 관련 안전	정보 보호 교육	4월 29일	교사 자체 연수
5	재난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수	5월 27일	교사 자체 연수
6	성폭력 예방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6월 24일	전문가 초청 또는 교사 자체 연수
9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9월 2일	전문가 초청
10	재난안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수	10월28일	교사 자체 연수
11	약물·사이버 중독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11월25일	교사 자체 연수

3)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월	영역	안전교육내용	교육형태
3	생활안전	안전한 유치원 생활	가정통신문
4	재난대비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정통신문
5	폭력 및 신변안전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부모 연수 및 교육자료 배부
6	생활안전	유괴를 예방해요.	가정통신문
7	생활안전	여름철 물놀이 안전	가정통신문
9	교통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해요.	가정통신문
10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전문가 초청
11	약물·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12	재난대비	겨울철 눈 오는 날 안전	가정통신문

3 교육활동 안전 강화

가. 방과후과정 안전관리

1) 유치원 원아관리 철저 (관리 교사)
2) 유아 안전지도 및 생활지도 철저 (방과후 과정반 현황기록부 비치 - 원아 관리)
3) 유아의 안전한 등원 및 귀가지도는 부모 동행을 원칙
4) 개인 상해 보험 가입 (학교 안전공제회 보험으로 대체)
5) 급식 및 간식은 학부모 요구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안전 관리 철저

나. 현장체험학습 및 견학 활동 안전계획

1) 견학 장소 및 시설, 차량이동, 프로그램 등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 견학장소를 정할 때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유아들의 이동경로에 따라 아이들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체크해본다.
   ⇨ 차량 이동 시 차량 안전점검표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을 하도록 한다.
2) 현장 답사를 통하여 거리, 소요시간,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등 확인하고 사전답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본다.
3) 인솔교사 및 유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 현장학습, 견학 가기 전 인솔교사들과 외부에서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직접 유아들에게 외부에서 지켜야 할 안전교육을 알려준다.
4) 위생적인 환경에서 유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식사 시간 중 생기는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5) 사건, 사고 발생 시 원장선생님과 부장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한 후 부모님께 연락한다. 원장은 즉시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 하도록 한다.
6) **현장체험학습 지도내용**

구분	지도내용
출발전	•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 ·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행렬에서 이탈해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마련 •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 조항 명시 •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 ※ 유치원→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팩스로 요청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 • 유아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 ※ 유치원→해당유치원 관할 경찰서로 공문 요청
유아	•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지도 교사에게 즉시 보고 •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기 •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

	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
교사	• 활동 전 과정에서 안전 및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인솔 및 지도교사는 체험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여부, 안전요원 배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지도교사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 인솔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 •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유아가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 인솔 및 지도교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각종 교육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 예방에 주력 • 교통안전지도, 화재예방지도, 위험시설 및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도, 질병예방지도, 등을 수시로 점검 • 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사전에 유아교육 실시 •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를 실시

7)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가) 비상 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사안 발생 즉시 신고 및 유치원과 시흥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피해 상황을 즉시 보고

나) 현장체험학습 전 유아 및 인솔자에 대한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치원에서 관리한다.

다) 유치원、교사、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한다.

라) <u>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u> 인지 즉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유선 보고하고,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 유치원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학생안전과
【☎ 주간(평일): 학교안전기획과
: 031-249-0683~4 (Fax 031-253-0035), 야간 · 공휴일: 당직실
: 031-249-0342 (Fax 031-249-0362)】

8) **사안 발생시 주체별 역할 안내**

유아 교사 및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	• 응급상황 발생 시 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인솔교사 **담임교사** 환자상태 파악	⇨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 응급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119 혹은 경찰서에 신고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처지, 구조요청, 현장관리, 의료기관 이송 여부 결정 - 상태가 중한 환자일 경우 응급처치와 동시에 즉시 119 연락 또는 이송차량을 확보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치료) •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연락 • 응급상황을 관리자(원감, 원장)에게 보고
원장 및 관리자 사고경위 파악 사후대책	⇨	• 지역 및 도교육청에 사고 경위 보고 •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 환자 병문안 등 치료를 위한 지원 • 사후대책 추진 시 학교 창구 일원화 유치원 ➔ 교육 지원청 ➔ 도교육청 (학생안전과) ➔ 교육부
행정사항	⇨	• 진료 결과를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건일지에 기록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 해당 담임교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가 보상신청

다. 각종 행사시 안전문화 확산

1) 각종 교육 행사 시 사업 주최(주관)부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시행 - 행사 시작 전 1분 안전교육
- 위기발생시 대피로, 소화기의 위치, 안전관련 간단한 지식 등 홍보
- 안전관련 지식은 '5분 안전교육' 자료 활용
- 비상차량(119차량 등)은 즉시 이동 할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
- 응급치료용 약품 각반 교실 비치
- 유아, 학부모, 교직원 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 캠페인, 안전 퀴즈대회 등 추진

2) 체육대회, 축제, 입학식 등 각종 행사시 계획 단계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시행
- 위기발생시 대피로, 소화기의 위치, 안전관련 간단한 지식 등

3))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 시 동영상, 리플렛 등을 이용하여 유치원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

4 유치원 안전문화 확산

가.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안전 실천

1) 5월 4주 재난안전 및 안전주간을 운영한다.
2) 생활주제'교통기관'과 연계하여 교통안전캠페인 등 유아들이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운영(매월 4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다. 유치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 학교장은 학기 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학교안전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연간 안전관리계획 통지
- 각종 안전 업무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
- 건강 이상 학생 학교 통보
- 안전사고 보상제도 통지 등

5 안전한 학교 시설 및 환경 조성

가. 유치원 시설 안전 점검

1)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운영(매월 4일)

-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 재난위험시설 안전 점검
- 공사 현장 안전 점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월' 안전 점검 실시 및 놀이기구 유지관리(관련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 법적 주요 의무사항 - 정기시설검사(법 제12조: 2년 1회 이상), 안전교육(법 제 20조: 2년 1회 4시간 이상), 보험가입(법 제21조: 매년 3월 2일 갱신)

○ 놀이시설 이용 안전수칙 교육 및 안내

나. 유치원급식 안전관리

- 급식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청소,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유아 및 조리종사자 손씻기 실천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식재료품질 및 식품안전관리 기준 준수하여 위험요소 사전 예방
- 유치원 급식소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협조
- 유치원 급식 종사자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 적극 안전 및 지원
- 화상, 넘어짐 재해 등 가장 빈번한 산재발생형태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

* 식중독 발생 시 대응절차

구분	수행 사항	관련 담당
<1단계> 발생인지	○ 결석생 사유 파악 및 보건실 방문 유아 관찰 후 **교내 보고** ○ **유치원장 주재 대책협의**를 통해 신고 여부 등 결정 ▷ 대책협의 : 관리자, 보건담당교사, 영양교사 등 참석 - 유증상자 현황 파악, 신고 여부 등 결정 ※ 보건소에 단순 문의 주의(신고로 오인)	담임교사→보건담당교사→유치원장 유치원
<2단계> 발생보고	○ 유치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 ▷ 유치원단위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유치원→보건소 및 교육지원청→교육부
<3단계> 원인·역학조사 준비 및 실시	○ **원인·역학조사 전 확인사항 준비 철저**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경위, 최초증상 일자, 주요증세(설사, 구토 횟수) 등 파악 및 기록 철저 - 가급적증상이 심한 유아들 대상으로 보건실로 이동토록 안내하여 보건실에서 1:1면담 조사 실시 - 역학조사 종료 전까지 유아들 귀가 보류 ※ 교내방송, 반별 손들기 등 전수조사 금지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적극 협조** ▷ 환자규모·분포도, 특이사항 파악 등 조사 협력 - 보존식 및 환경검체(조리도구, 음용·조리용수 등) 수거 - 설문조사(환자·대조군 조사), 채변검사 실시	유치원 교육지원청 및 지방식약청 -시·군·구(위생부서) -관할보건소(감염부서)
<4단계> 조사 후 조치	○ 유치원급식 제공 여부 결정 ○ 급식실, 교실 등 유치원시설 대청소 및 소독·방역 ○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유도 ○ 학교안전공제회에 발생 사실 통보 ○ 언론보도 대응 철저	유치원 각 기관
<5단계> 모니터링	○ 유증상 유아 지속적 모니터링 ○ 개인위생관리 지도 및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유치원 교육지원청

다. 유치원 출입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1) 안전관리 방침

1) 재난 종류 및 위험도에 따라 출입구 및 비상구 개폐 신속 결정(원장)

2) 외부인 및 위험물 1차 검수(행정실) 및 보관 사용 관리 지정(각 담당자)

3) 유치원 안전지킴이 자원봉자활동으로 학생보호인력 활용 및 고화소 CCTV 설치로 안전망 구축

2) 출입 방침과 절차

1) 출입문 개폐

가)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실무사 및 주무관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함

2) 일반출입 기록 대장

가) 일반출입을 하는 자는 행정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유치원 출입을 허가함

나) 방과후 강사, 시설 유지보수 관리사 직원 등 정기적인 방문객은 교내 출입을 허가함

3) 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가) 교직원과 유아를 대상으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를 발견 시 즉시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함

나) 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 기록대장 장소로 인계하여 절차에 따라 안내하여야 함.

라. 원내 차량 통행 및 주차관리 방침

1) 차량 통행 및 주차 관리

교직원의 출퇴근 및 원아 등하원 시 인명사고 방지 및 외부인 출입통제

2) 관리 및 통제 방법

1) 외부차량 출입

교직원출입차량 및 비상차량(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를 제외한 외부차량의 출입시 방문 담당자의 출입안전 확인(외부인 포함)

마. 물품수령 방침과 절차

구분	내 용
수령방침	○ 교무실 및 행정실에 연결된 인터폰으로 통화하여 신분확인 후 출입을 허가 ○ 각종 위험물 차단 및 해당 물품의 담당/소유자 확인 ○ 위험물, 부패가능 식음료의 안전 보관 ○ 식자재의 경우 영양사가 담당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장소에서 수령 ○ 사적물품 수령 금지
수령절차	○ 물품종류(위험물, 식음료, 기타 물품), 수령인 확인 ○ 검수장소(교무실, 행정실), 수령인 파악 ○ 수령인의 직접적인 검수 및 수령

바. 비상탈출구 관리

1) 학교 비상대책반 중 현장대응반은 건물 각 층 유리창문과 비상시 탈출구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민방공 훈련 시 비상탈출구를 활용하여 실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

사.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1) 원내 시설 개방 방침

가) 보안상의 이유로 원내 시설(교실, 강당 등)의 원칙적 개방 금지

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방은 요구처의 사용안전계획 검토 후

예외적 허용

2) 안전관리

가) 사용기관의 시설 사용/안전계획서 및 관련 공문 검토 후 이용방침 통보

나) 이용 후의 위험요소 제거 확인

아.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

1) 목적

가) 유아의 등·하원 길 생활속에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유치원을 구현한다.

나) 등·하원 길 위험요소 실태 조사 및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 방침

가) 유치원 통학안전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나) 유아, 학부모, 교원 대상의 통학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자. 비상 배낭 마련과 관리

- 유치원과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교실배치도), 유치원교직원 명단, 화재경보기 작동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등이 담긴 비상배낭(구명로프(10m이상), 손전등, 비상약품, 차량 탈출용 망치, 칼, 면손수건, 호루라기 등)을 행정실에 비치하여 보관·관리한다.

차.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방침

1) 방침

비상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실 내 상시 비치함

2) 관리 방법

가) 행정실장 및 시설주무관은 분기별로 마스터키(비상열쇠)를 점검하여 보안 관리 철저히 함

나) 비상 시 시설주무관은 마스터키(비상열쇠)를 들고 대피장소로 이동함

타. 보관구역 관리방침

1) **시설 장비 및 화학물질 기타 위험물 관리**

가) 원아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공간(각종 창고)에 보관

나) 원아의 동선과 겹치는 각층 전기 및 소방 장비는 시건장치 및 출입통제 확인 철저

2) 보관구역 관리

가) 식료품

급식실 및 유치원 1층 주방 내 냉장고에 비치하고 영양사가 관리함

나) 유해물질

(1) 세제류 : 유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화장실 옆 수납장에 비치하고 청소도우미가 관리함

(2) 화학류 : 각 반 교실 내 유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상부장에 비치하고 교사가 관리함

(3) 약품

(가) 원무실 내 약품장에 비치하고 각 반에서는 비상약품가방을 비치하여 관리함

(나) 보건담당교사가 약품목록을 작성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즉시 폐기처리함

Ⅲ. 사고 대비 활동

1 재난 대응 합동 훈련 계획

가. 재난대응훈련주간

1) 일시 : 2020년 5월 또는 10월

2) 재난대응훈련주간에 맞춰 계획 수립예정

나.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맞춤형 대응 훈련 시행 및 대피로 확보

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1회 이상 실제훈련 실시

2) 체험위주 유아·현장 중심의 안전훈련 실시

3) 재난 취약유아(유아·특수) 대피 및 훈련 강화

4) 안전생활 습관화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 유아 참여 강화

5) 주입식 훈련을 탈피, 체험 위주의 다양한 훈련 방법 적용

가) 유치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상황보고 및 전파 훈련 강화

나) 상황별 재난 단계별 교직원 상황 판단 및 보고, 조치능력 강화

다) 원장 중심의 교직원 상황판단 회의와 실제훈련 병행 추진

라)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협업 대응능력 강화

6) 비상차량 이동 동선 점검 및 확보(불법주정차, 시설·구조물 이동 등)

7) 교실 등 실내의 복도, 계단 등 이동 통로에 상시 적치물 철거

가) 소방 법규나 지침에 위반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 및 시설보강

2 원내 화재 대피훈련 계획

가. 목표

1) 화재 발생에 대비한 현장훈련으로 대피 절차 및 행동요령을 익힌다.

2) 반복적인 대피 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3) 다양한 상황에서의 화재대피 훈련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능력을 기른다.

나. 방침

1) 화재 발생 상황에 따른 사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훈련이 되도록 한다.

2) 유아들이 안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대처훈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3) 화재 대피훈련 전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안전교육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다. 훈련 안전지침

구분	내용
훈련 안전 지침	■ 화재발생 경보 사이렌과 방송이 나오면 모든 반에서 신속히 정렬시킨다. ■ 각 층별 대피 순서에 따라 신속히 대피시킨다. - 대피 시 젖은 수건 ·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도록 한다. - 인솔교사는 맨 앞에 서서 유아들을 인솔하여 소란하지 않도록 조용히 대피시킨다. -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므로 타지 않도록 하고 계단으로 대피시킨다. ■ 대피한 학급 순서대로 대피 장소에 모인다. ■ 지정된 대피 장소에 반별로 다 모인 후 반별의 대피 상황(피해자, 부상자 등)을 파악한다. - 전체 대피가 끝나면 대피 인원수와 상황을 보고한다.
교사 대처 방법	■ 화재경보 장치가 작동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한다. ■ 화재를 확인하면 즉시 소방서(119)로 신고한다. ■ 유치원 및 유치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먼저 큰소리로 교직원 및 유아에게 알리고 상황을 보고한다. ■ 교직원 의해 초기 소화를 진행한다. -화재가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경우는 소방차를 기다린다. ■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화재 장소에서 구해서 응급처치를 한다. ■ 화재 장소와 규모, 풍향 등을 고려해서 피난장소를 정한다.

라. 훈련대책반 조직 및 임무

훈 련 본 부
본 부 장: 원장
부본부장: 원감

상황반	안내.유도반	응급구조반	소화반
교무부·안전부	연구부·부장교사	건강담당, 비담임, 방과후	행정실장

전체적 훈련 상황 통제			유아대피 안내 및 통제			응급 구호 활동			화재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1	교무 실무사 /방송담당	경보 접수 및 방송		담임 교사	원아 대피 인솔	1	건강 담당자	응급구호소 운영	1	주무관	화재 진압 대응 및 진압 총괄
				비담임	각학년 남은 유아 확인						
	교무 부장	훈련 상황 통제 발화지점 통제	1	3학년 학년부장	3층에서 대피 인솔			구급약품함 준비			화재 신고
	교무부	유관기관 협조 비상연락망 유지		2학년 학년부장	2층 확인 및 인솔	2	비담임 /방과후	응급구조 요청			소화조
2	담임	교육실시		1학년 학년부장	1층 확인 및 인솔			응급구조	2	행정실장	정전대응·조치
	교무부	대피소 준비 및 외부 대피 원아 지도	2	방송담당	대피 소요 시간 측정 및 사진 촬영						최종인원 점검

※각종 재난대비 훈련대책반 조직도와 일원화 하여 운영함

구분	조직별 역할	사전준비물
상황반	■ 유치원 내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유관기관 -소방서(119), 교육청, 경찰서(지구대) 등	■ 방송장비, 사이렌, 방송시나리오, 사전교육 동영상
안내 유도반	■ 메가폰, 호루라기, 교통 신호봉, 손전등 등을 휴대(정전 대비)하여 각층 비상구(계단)와 대피소 등에서 유아 대피를 유도 ■ 재난위험경보 발령 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유아들을 안전장소로 대피유도임무 수행 ■ 병목 구간 안전사고 통제 ■ 장애유아 우선 대피 지원 ■ 각반 교사는 각실별 유아 유무 철저히 확인후, 대피(교실, 화장실 등) ■ 비담임 교사는 학년별로 대피지원 및 교실에 남은 유아 확인 후 최종 대피 (교실, 화장실, 특별실 점검)	■ 유아 관리 -원아명부, 양말 또는 덧신 ■ 대피 훈련 지원 -메가폰, 호루라기, 교통 신호봉, 손전등 등 -안내를 위한 유도표시, 대피경로, 대피소 표시 ■ 기타: 타이머, 카메라 등
응급 구조반	■ 환자발생 시 응급 구호소에서 처치	■ 응급의약품, 들것
소화반	■ 화재발생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화재 진압	■ 발화지점 표시 및 대피 자세 유지 -푯말, 붉은 색 긴 천, 물휴지 및 수건발화지점 표시를 위한 푯말, 붉은 색 긴 천, 소화기

마. 훈련세부일정

시간	훈련 내용	비상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
09:50~10:00 (10분)	■ **사전 교육**	■ 화재 대피 훈련 시 행동 요령 사전 교육 실시 -화재 발생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신속히 줄서요 -대피 시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나와야 해요 -떠들지 않고 조용히 대피해야 해요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므로 타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해야 해요 -밖에 나가서 안전한 대피 장소로 모여요
10:00~10:05 (5분)	■ **대피 훈련 안내**	■ 훈련경보 접수 및 전파
10:05~10:10 (5분)	■ **화재 발생** ■ **화재 위험 경보 발령**	■ 화재발생 위험 경보 발령 ■ 각 학급의 전원 차단 및 소등 ■ 대피 지시 ■ 훈련 대책반 가동
10:10~10:25 (15분)	■ **화재 발생 대피 훈련** ■ **훈련 평가**	■ 학급별 출입문 쪽 유아부터 순서대로 정렬 ■ 인솔교사와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이동 -다른 학급과 섞이지 않도록 대피 순서에 따라 차례로 대피 -대피 시 앞사람(학급) 추월 금지, 침착 및 질서 유지 -환자와 장애유아 안전 대피 우선 대피 지원 ■ 안내·유도반은 유아 대피 확인 후 마지막에 대피장소로 이동 ■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인원 파악 ■ 상황반은 피해 상황 파악 보고 ■ 응급구조반은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구호활동 실시 ■ 훈련 내용 종합 평가
10:25~10:30 (10분)	■ **훈련 해지 및 입실**	■ 대피 훈련 종료 후 안전하게 각 학급별 교실로 이동

바. 화재 대피 훈련 내용 및 시나리오

시간			훈련 내용	시나리오
시작	종료	소요		
10:00		5분	대피 훈련 안내	■ 유아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화재 대피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 오전 10:00부터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 각 학급에서는 계속해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재난 방송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0:05	10:10	5분	화재 발생 및 화재 위험 경보 발령	■ 현재시각 10:00을 기해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 유치원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학급 담임선생님께서는 교실의 전기 스위치를 차단하시고 앞 출입문, 뒤 출입문을 열어 비상 탈출구를 확보한 후 상황 방송을 계속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렌 발령
10:10	10:25	15분	화재 발생 대피 훈련 및 훈련 평가	■ 어린이 여러분! ■ 이 상황은 훈련 연습 상황입니다. ■ 이 상황은 훈련 연습 상황입니다.(2번 반복) ■ 우리 유치원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인솔교사의 인솔하에 유아들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중앙 계단 및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한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주변에 아픈 유아 및 장애우 유아들이 있는 경우 아픈 유아 및 장애유아를 먼저 대피시키고, 안전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안전한 대피 장소 확보 ■ 안내·유도반은 유아 대피 확인 후 마지막으로 대피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 장소에 도착한 학급에서는 인원을 파악해 주시고 대피유도반은 대피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반은 현재 피해 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화반은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구조반은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구호활동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에 참여한 모든 유아가 안전하게 대피하였고, 화재가 진압되었으며 응급환자도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 원장선생님의 훈련 평가가 있겠습니다.
10:25	10:35	10분	훈련 해지 및 입실	■ 현재시각 10시 25분을 기해 화재 위험경보를 모두 해제합니다. ■ 이상으로 화재대피 현장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어린이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진 대피훈련 계획

가. 목표

1) 지진 발생에 대비한 현장훈련으로 대피절차 및 행동요령을 익힌다.
2)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한다.
3)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상황별 비상 행동요령을 알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나. 방침

1) 지진 발생 상황에 따른 사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훈련이 되도록 한다.
2) 유아들이 안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대처훈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3) 대피장소, 대피방법, 대피경로, 이동시 안전교육 등을 사전에 교육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다. 안전 지침

구분	내용
훈련 안전 지침	■ 지진발생 경보 사이렌과 방송이 나오면 교실 내 안전 공간으로 대피한다. - 유아는 책상(혹은 생명의 삼각형 공간) 아래 들어가 가방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다리를 붙잡고 안내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한다. ■ 대피 안내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정렬한다. ■ 각 층별 대피 순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 시 파편 잔해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고, 가방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하도록 한다. ■ 대피한 학급 순서대로 운동장(대피장소)의 약속된 장소에 반별로 선다. ■ 지정된 대피 장소에 반별로 다 모인 후 반별의 대피상황(대피자, 부상자)을 파악한다. - 전체 대피 종료가 확인되면 대피 인원수와 상황을 보고한다.
교사 대처 방법	■ 지진 발생 경보 사이렌이 나오면 교사는 전원과 가스를 차단하고 출입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지진 발생 시 책상 밑으로 숨고 의자를 단단히 잡는 것을 평소에 훈련시킨다. ■ 실외운동장에서는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떨어져 운동장의 중앙으로 피난시킨다. ■ 이차적으로 일어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조리실 등 화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교무실에 있는 교직원은 긴급방송을 한다. -상황에 따라 유아의 안전 확보, 피난경로 확보, 화재의 초기소화를 실시한다. ■ 유치원이 토사재해 등의 위험지역에 있는 경우는 유아를 다른 피난장소로 대피시킨다.

라. 훈련대책반 임무

구분	조직별 역할	사전 준비물
상황반	■ 유치원 내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유관기관 -소방서(119), 교육청, 경찰서(지구대) 등	■ 방송장비, 사이렌, 방송시나리오, 사전교육 동영상
안내 유도반	■ 메가폰, 호루라기, 교통 신호봉, 손전등 등을 휴대(정전 대비)하여 각층 비상구(계단)와 대피소 등에서 원아 대피를 유도 ■ 재난위험경보 발령 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유아들을 안전장소로 대피유도임무 수행 ■ 병목 구간 안전사고 통제 ■ 장애유아 우선 대피 지원 ■ 각반 교사는 각실별 유아 유무 철저히 확인후, 대피(교실, 화장실등 점검) ■ 비담임 교사는 학년별로 대피지원 및 교실에 남은 유아 확인 후 최종 대피 (교실, 화장실, 특별실 점검)	■ 유아 관리 -원아명부, 가방 또는 방석 ■ 대피 훈련 지원 -메가폰, 호루라기, 교통 신호봉, 손전등 등 -안내를 위한 유도표시, 대피경로, 대피소 표시 ■ 기타: 타이머, 카메라 등
응급 구조반	■ 환자발생 시 응급구호소에서 처치	■ 응급의약품, 들것
소화반	■ 화재발생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화재 진압	■ 발화지점 표시 및 대피 자세 유지 -푯말, 붉은 색 긴 천, 물휴지 및 수건발화지점 표시를 위한 푯말, 붉은 색 긴 천, 소화기

마. 훈련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상대응절차 및 행동요령
09:50~10:00 (10분)	■ **사전 교육**	■ 지진대피 훈련 시 행동 요령 사전 교육 실시 -지진 발생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책상 아래 들어가 가방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다리를 붙잡고 안내방송을 들어요 -대피 방송(1차지진 파동 멈춘 후)이 나오면 신발을 신고 가방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피해요 -밖에 나가서 안전한 대피 장소로 모여요
10:00~10:05 (5분)	■ **대피 훈련 안내**	■ 훈련경보 접수 및 전파
	■ **지진 발생** ■ **지진 위험 경보 발령**	■ 지진발생 위험 경보 발령 ■ 각 학급의 전원 차단(소등) 및 출입문 개방

10:05~10:10 (05분)	▪ 1차 실내 대피훈련	▪ 유아들은 교실 내에서 책상 아래로 들어가 가방이나 방석으로 머리 보호 ▪ 안내 방송 청취
10:10~10:15 (5분)	▪ 재난 경계경보 발령	▪ 1차지진 파동 멈춤 알림 및 실외 대피지시 ▪ 훈련 대책반 가동
10:15~10:30 (15분)	▪ 2차 실외 대피훈련 ▪ 훈련 평가	▪ 학급별 출입문 쪽 유아부터 순서대로 복도에 정렬 ▪ 인솔교사와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이동 -다른 학급과 섞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피 -대피 시 앞사람(학급) 추월 금지, 침착 및 질서 유지 -신발 착용, 방석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 **-환자와 장애유아 안전 대피 우선 지원** ▪ 안내·유도반은 유아 대피 확인 후 마지막에 대피장소로 이동 ▪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인원 파악 ▪ 상황반은 피해 상황 파악과 보고 ▪ 응급구조반은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구호활동 실시 ▪ 훈련 내용 종합 평가
10:30~10:40 (10분)	▪ 훈련 해지 및 입실	▪ 대피 훈련 종료 후 안전하게 각 학급별 교실로 이동

바. 지진 대피 훈련 내용 및 시나리오

시간			훈련 내용	시나리오
시작	종료	소요		
09:50	10:00	10분	대피훈련 안내	▪ 어린이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지진 대피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 오전 10:00부터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 각 학급에서는 계속해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재난 방송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0:00	10:05	5분	지진 발생 및 재난 위험경보 발령	▪ 현재시각 10:00을 기해 우리나라 전역에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 사이렌 발령
10:05	10:10	5분	1차 실내 대피훈련	▪ 어린이 여러분! ▪ 이 상황은 훈련 연습 상황입니다. ▪ 이 상황은 훈련 연습 상황입니다. (2번 반복)

				■ 규모 6.5 강진 발생으로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 학급 담임선생님께서는 교실의 전기 스위치를 차단하고 앞 출입문, 뒤 출입문을 열어 비상 탈출구를 확보하여 주시고, 어린이 여러분은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책상다리를 붙잡고 몸을 안전하게 한 후 상황 방송을 계속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 상황에 따라 멘트 반복
10:10	10:15	5분	**재난 경계경보 발령**	■ 1차지진 파동이 멈추었으므로 현재시각 10:10분을 기해 우리나라 전역에 내려진 재난 위험경보를 재난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 여진이 일어나기 전에 인솔 교사의 지도하에 어린이들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중앙 계단 및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한 대피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당일 안전한 대피장소 확보
10:15	10:30	15분	**2차 실외 대피훈련**	■ 우리 주변에 아픈 유아 및 장애 유아가 있는 경우 아픈 유아와 장애 유아를 먼저 대피시키고, 안전하게 대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유도반은 유아 대피 확인 후 마지막으로 대피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 장소에 도착한 학급에서는 인원을 파악해 주시고 대피유도반은 대피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반은 현재 피해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화반은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구조반은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구호활동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에 참여한 모든 유아가 안전하게 대피하였고, 화재가 진압 되었으며 응급환자도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 원장선생님의 훈련 평가가 있겠습니다.
10:30	10:40	10분	**훈련 해지 및 입실**	■ 현재시각 10시40분을 기해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경보를 모두 해제합니다. ■ 이상으로 재난대피 현장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어린이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서 안전하게 교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안전 대응 및 행동수칙

1 아동학대

가. 예방

1) 아동학대 정의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2) 교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확인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가)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복지법 제 26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교직원

다) 신고의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함

라) 교육: 대상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1시간 이상 교육

마)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나. 대처사항

구분	내용
교사의 아동학대 징후 인지	• 아동의 상처에 대해 보호자의 설명이 모호한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신고 의무사항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부과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고 기관	• 반드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신고 내용	• 아동의 *이름, *주소, 성별, 나이 • *내용(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등) •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나이(성인여부), 이름, 성별, 주소 ※ "*"필수사항

2 미세먼지

가. 미세먼지 예보제

1) 목적: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2) 예보권역: 경기남부, 경기북부 2개 권역

3)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_{10})	0 ~ 30	31 ~ 80	81 ~ 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_{2.5}$)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급은 PM_{10}과 $PM_{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4)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1) 미세먼지 담당자가 예·경보 상황을 상시 확인

2) 실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 단계별 조치사항 실시 및 경보발령 시 조치결과 보고(교육지원청, 7일 이내)

3)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_{10} 100㎍/㎥, $PM_{2.5}$ 35㎍/㎥) 준수

※ 임시휴업의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지원)청에 보고

다. 단계별 조치 사항

< 대응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구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 해제	발령해제 및 결과보고
유치원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교육, 대응방안 검토	미세먼지 농도 확인, 실외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7일 이내→교육청)

1) [1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가) 상 황: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7시 기준)

< 예보 “나쁨” 이상 요건 >

- **(미세먼지 PM_{10})** 해당지역의 PM_{10} 24시간 평균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될 때
- **(미세먼지 $PM_{2.5}$)** 해당지역의 $PM_{2.5}$ 24시간 평균농도가 36㎍/㎥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나) 조치사항

< 사전 준비사항 >

- 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체, 외출 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강당수업)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 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유아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유아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_{10} 100㎍/㎥, $PM_{2.5}$ 35㎍/㎥) 준수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학년 초 유치원은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생 등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
  - 담임교사는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보건실에 상비약, 보건용 마스크 등 구비
-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의 마스크 사용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주의 사항 안내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문자 발송(마스크 착용 후 등교, 행동요령 안내 등)
-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수시 확인(에어코리아(airkorea.or.kr), <u>우리동네 대기정보</u> 앱)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점검

2)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 상 황: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 ~ 18:00)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건 >

- **(미세먼지 PM_{10})**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_{10} 81㎍/㎥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_{2.5}$)**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_{2.5}$ 36㎍/㎥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및 에어코리아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1시간 단위 업데이트

나) 조치사항

- 담당자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유치원 실외수업 자제,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교육실시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외부 노출 시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안내, 보호자 비상연락망, 문자를 통한 조치상황 공지

3) [3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가) 상황

< 주의보 발령 요건 >

- **(미세먼지 PM_{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_{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_{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나) 조치사항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교육 실시
- 유아·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유아 관리대책 이행

※ 천식, 아토피 등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유아 건강 체크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 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조정을 검토

※ 임시휴업을 한 경우 교육청에 즉시 보고

※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 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 함께 결정

-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유아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대리인) 동행

4) [4단계]미세먼지 경보 발령

가) 상황

< 경보 발령 요건 >

- **(미세먼지 PM_{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_{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_{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_{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나) 조치사항

- 실외 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기상예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하교시간 조정을 적극검토하고, 휴업을 검토
- 조치결과 보고 <7일 이내→교육지원청>
- 외출시 마스크·보안경 등 착용, 손과 눈·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물 섭취등 행동요령 교육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상비약, 마스크 등 비치)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

5) [5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가) 상황

< 발령 해제 요건 >

○ 주의보

- **(미세먼지 PM_{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_{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_{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미세먼지 PM_{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_{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_{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

나) 조치사항

<주의보 발령 해제시>

- (공통) 발령 해제 내용 전파 및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경보 발령 해제시>

- 주의보 전환: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전체 해제 : 발령 해제 내용 전파 및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6) [6단계]조치결과 등 보고

- 경보발령 현황 및 조치결과 등 보고

3 감염병 대응

가. 개요

1) 대응 체계

원장
각종질병 발생 보고 및 감시

- □ 유치원 질병 감시 담당자 :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 □ 관찰대상
  - 병결 유아에 대한 결석, 조퇴 사유 파악
  - 현재 증상이 있는 유아 (학급 유증상자 등)

원장·의사
진단·확인
보고·신고

- □ 첫 발생환자 보고 : 원장(원감) □ 진단: 병의원 의사
- □ 병.의원에 진단 및 진료 의뢰, 의사 진단 확인
- □ 교실내 소독 및 예방교육
- □ 감염병 확진 시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에 통보

교육지원청, 보건소
감염성 여부 및 유행규모 파악

- □ 유사환자 신속 파악
- □ 유행 및 집단발병 여부 판단
- □ 유행여부에 따라 유치원에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
- □ 방역당국 역학조사 의뢰

역학조사
(방역당국)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방역당국 - 교육청 - 유치원)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보고 및 출결관리	환경위생관리	보건교육
‣ 환자 검체 채집 ‣ 설문조사	‣ 치료조치 ‣ 격리조치 ‣ 접촉자 파악 ‣ 발병 감시	‣ 등원중지 처리 ‣ 휴원휴업 검토 ‣ 보고체계 구축	‣ 규칙적인 환기 ‣ 소독 실시 (시설물, 취약 지역 등)	‣ 질병예방교육 ‣ 개인위생교육 ‣ 학부모 교육

2) 법정감염병

-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으로 구분되는 감염병

제1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6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
제2군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12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
제3군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등(19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예외 : 인플루엔자는 7일 이내)
제4군	•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동물인플루엔자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 • 의료기관 신고 : 지체없이
제5군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6종) • 의료기관 신고 : 7일 이내
지정	• C형 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17종) • 의료기관 신고 : 7일 이내

3) 감염성 질환의 특성 및 주요증상

질병	주요증상	전염가능 기간	등원중지 기간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카타르기에 가정 전염성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홍역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 부종	침샘이 커지기 1~2일 전부터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증상발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피로감, 피부발진, 수포	수포가 생기기 1~2일 전부터 모든 수포에 딱지가 형성될 때까지	모든 수포에 딱지가 형성될 때까지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가래	증상 발생 1~2일 전부터 7일 혹은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해열된 후 2일 후까지
수족구병	발열, 손 .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 피부 병변에 액체가 남아있는 동안	발병 후 1주일까지
결핵	발열, 전심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증상 시작 ~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유행성 각 . 결막염	안통, 충혈,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등	잠복기 이후부터 발병 후 2주까지	증상이 사라진 후 2일 경과할 때까지

나. 예방

1) 감염병 발생 차단 및 예방교육

가) 유아, 교직원, 보호자(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탑재) 보건교육 실시
나) 손 씻기 철저 지도 : 하루에 8번 이상 30초씩('1830'손 씻기 운동) 세정하는 것을 원칙
다) 예방접종 지도
라) 규칙적으로 실내 환기,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
마) 소독: 교실 장난감· 세면대·문손잡이· 책상 등, 행정실의 협조를 받아 학교내 시설 방역
바)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품(마스크, 체온계 등) 및 위생용품(비누, 손소독제 등) 구입
사) 교실내 감염병 예방 교육 게시물 및 각종 홍보물 부착
아) 점심 및 간식 먹기 전 손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적극적인 예방교육 실시
자) 기침예절, 바른 마스크 사용 등 위생수칙 안내

다. 대처

1) 평상시 대응

가) 단계 및 주요 대응

단계		상황	주요 대응 내용
대 비		•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전	‣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서 수립 및 감염병 예방활동 시행 ‣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처요령 교육 ※ 대응단계에 따라 추가교육 실시
대응	1 단계 유증상자 발견 시 대응	• 유치원내 감염병 유증상자 1명 이상 확인	‣ 초기 응급처치 실시 ‣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 등원중지 안내 및 병원진료 의뢰
	2단계 환자파악 및 유행여부 판단	• 유치원내 감염병 확진 또는 의사환자 1명 이상 발생	‣ 유치원내 감염병 유행 감시 - 담임교사 : 학급별 환자 파악 - 보건담당교사 : 학급별 환자 집계 분석 ‣ 감염병 발생양상에 따른 유행여부 판단 ‣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 확진환자 발생시 상황을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3 단계 유치원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및 확산방지	• 유치원내 감염병 유행 **<유행 판단기준(예시)>** • 동일 학급내 2명 이상 발생 • 급성열성호흡기 질환 :전체 인원의 5% 발생	‣ 유치원 감염병 대책기구 운영 ‣현장대응반(담임/안전부장/보건담당/교무부장 등) : 유증상자, 접촉자, 2차 감염의심자 등 파악하여 보건담당교사에게 알림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유아 및 학부모 보건교육 진행 ‣ 교내지원팀(담임/방과후 전담사등) : 등교중지 출결확인 및 가정학습관리, 유증상자 처치 및 진료의뢰, 의심환자 관리, 상황판 작성 ‣ 행정지원팀(행정실장) : 방역, 예산지원, 역학조사 협조, 대내외 홍보
	4 단계 상황 종료	•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음 • 파악된 모든 접촉자가 최대잠복기까지 의심증상이 없음	‣ 보건담당교사 : 기간별, 학년별 확진 환자 수, 처리 내용, 역학조사 내용 등을 정리하여 감염병 발생 종료 보고

나) 감염병 발생 유아를 격리, 등원중지, 보호자와 연락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함
- 감염병 유행시 대중시설이나 단체 활동 자제, 유치원에 외부인 출입 자제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유도, 기침시 코와 입을 가림

다) 감염병 발생 시 등원 중지 조치
- 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담임교사는 의사진단에 의거 감염성 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원중지를 시킴
- 등교 중지 학생이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하고,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함.
- 등교중지, 격리, 감염병 조치 등은 '학생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함

2) 국가위기상황발생시 감염병(예: 코로나 등) 감염자 예방 및 관리

가) 관리자는 교육지원청 및 행정구역 관할 시군구 보건소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

나) 감염병 담당자(보건업무 교사)는 유아·교직원 및 기타 방문객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다) 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구비

라) 손잡이, 계단, 엘리베이터 버튼 등 소독(방역) 강화

마)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 및 결석생 수 확인과 호흡기, 발열, 소화기 및 기타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업무 교사에 연락함

바)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학부모와 연락 및 즉시 등교 중지하고 관할 보건소 및 병의원에 진료 연계함

사) 감염자에 대한 치료 상황을 파악하여 가정에서의 격리 치료에 따른 협조 사항 안내

아) 등교중지 중인 원아가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염 사례 차단

자) 유아·학부모 대상으로 예방교육,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안내

3) 국가위기상황발생시 감염병(예: 코로나 등)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가)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함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나)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다)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N95 또는 동급)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담당자는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N95 또는 동급) 착용, 보건소 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라)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교육부 동의를 받아 시행

마)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Ⅴ. 안전사고 회복 지원

1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가. 상담 및 치료 지원

- 유치원안전사고 및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유아를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 위기사안 발생시 지역의 위(Wee)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
- 유아의 건강한 유치원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기획 운영

2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가.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 통지
- 공제급여 청구 및 공제 제도 적극 안내

*** 공제 급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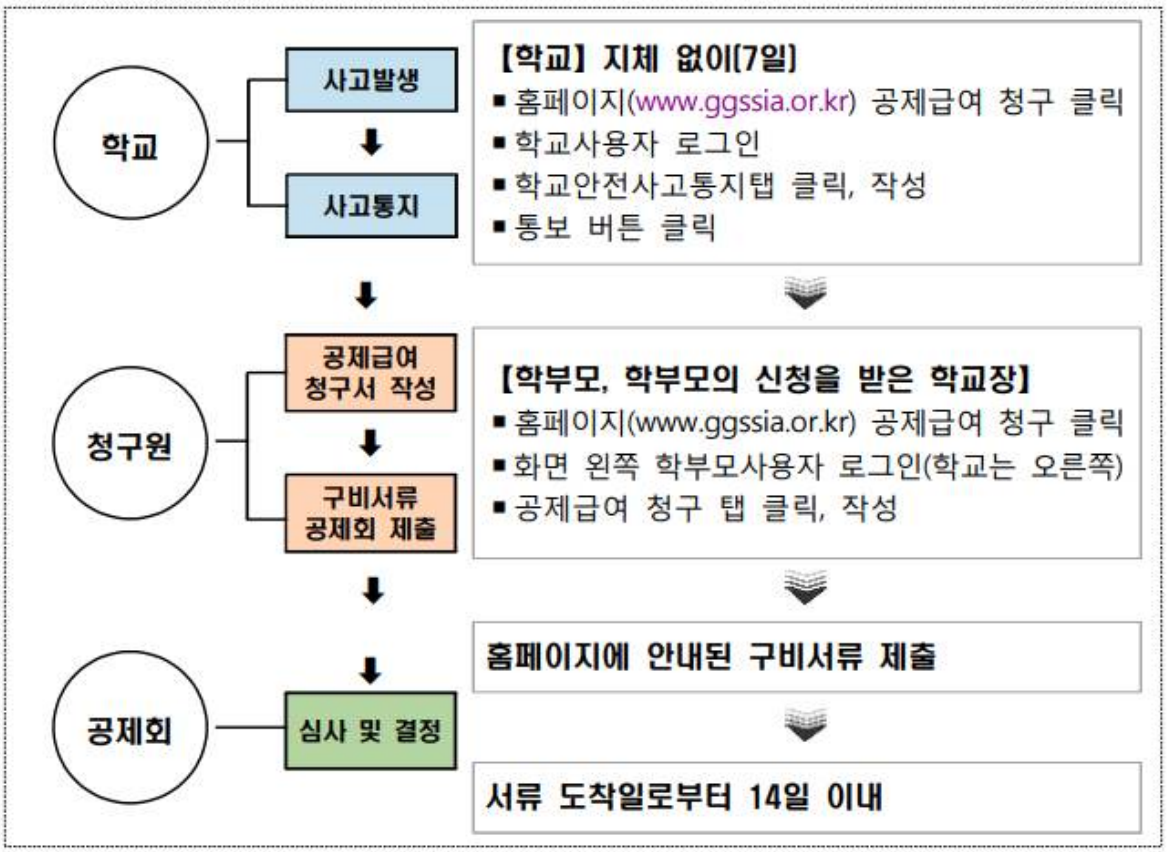

나. 유치원안전사고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처리 절차

1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2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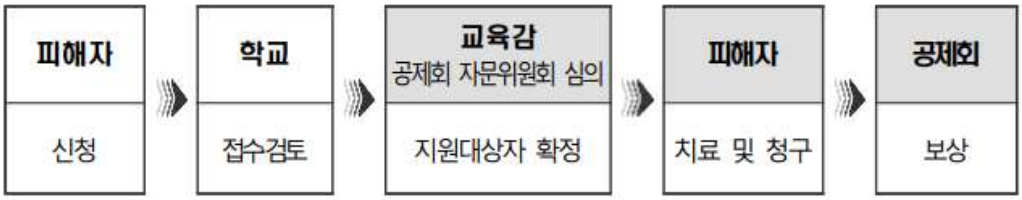

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피해복구

- 재난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복구비 지급 신청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복구비 신청절차**

재난발생 → 공제회로 재난 발생신고 →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류 송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경기인청부 ☎ 02-781-0152

1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전검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 . .

점검(교육)자	회사명	담당자	유치원명	교사	학부모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예시)

■ 수　　신 :
■ 발　　신 :
■ 보고 일시 : 20 .　.　.
■ 기본 사항

유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안명		사안 발생일시	
사고 교사 및 학생	<사고학생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 발생 즉시 유선보고 후,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송부

■ 사안 개요

▪ 사안 내용 (6하 원칙에 의해 기술)
▪ 언론보도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경찰 조사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조치사항 및 향후 사안 수습 계획

3 안전사고 발생시 사안대응 체크리스트

*** 사안대응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조치시간	확인자	비고
☐ **사고 신고**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 **사고현장 보존 및 구호조치 (2차 사고 예방)**			
☐ **상황보고** 유치원장 보고, 상급기관 보고			
☐ **현장사고 수습본부 가동**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설치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분배 - 반별 사안처리 및 진행상황 확인			
☐ **현장대응반장** - 현장대응반 담당자별 세부 역할 지시 - 해당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후송병원별 담당교사 배치			
☐ **피해유아 보호자 연락**			
☐ **사고관련 정보 수집** - 최초신고자 진술 - 목격자 진술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 - 기타 사고관련 자료			
☐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확인 (시간대별)** - 인적 피해: 사망 명, 부상(중,경상) 명, 실종 명 - 물적 피해:			
☐ **사안당사자 정보제공 및 반별 학생관리**			
☐ **교내지원반장** - 유아 현황 파악 - 장례(조문) 계획 수립 - 학사일정 조정계획			
☐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 **관련문서 작성**			
☐ **상담지원** 요상담, 요보호학생 조치			
☐ **행정지원반장**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유아 귀교 대책 계획			
☐ **유관기관(자문기관) 협조 요청 (법률자문 및 지원)**			

교실(　　)

배곧초록유치원

날짜: 2020년　　월　　일　장소:　　점검책임자:			
★ 표시: ○=「상태좋음/이상없음」 X =「결함/이상있음」 △=「보통/관리자확인필요」 =「해당사항없음」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1. 바닥			
1.1. 교실 바닥의 안전상태 (균열 및 마감재 탈락 및 노후화, 보행 장애물 상태여부)			
2. 벽			
2.1. 벽체 안전상태 (균열 및 기울임 상태여부)			
2.2. 벽체 부착물 안전상태(칠판, 선풍기 등의 고정 상태여부)			
2.3. 콘센트 안전상태(먼지, 탄 자국, 고정 불량, 문어발식 사용 상태여부)			
3. 출입문			
3.1. 출입문의 안전상태(레일, 손 끼임 방지, 부착물 등 상태여부)			
4. 창호			
4.1. 창호 안전상태(유리, 보호시설(추락방지용)의 고정 등 상태여부)			
4.2. 창호 개폐상태(레일, 창틀의 손상여부)			
5. 복도			
5.1. 복도의 안전상태(피난관련시설 등 상태여부)			
6. 천장			
6.1. 천장 마감재 안전상태(처짐, 파손, 누수 흔적 등 상태여부)			
6.2. 천장 부착물 안전상태(전등, 선풍기, 냉방설비, 빔프로젝트 고정 상태여부)			
7. 기타			
7.1. 소화 및 가스설비 안전상태(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및 전문점검결과)			
7.2. 책걸상 안전상태(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건축물 점검표

배곧초록유치원

날짜: 2020년 월 일 점검책임자:

★ 표시: ○=「상태좋음/이상없음」X =「결함/이상있음」△=「보통/관리자확인필요」 =「해당사항없음」

점검항목		점검 결과	위치	특이 사항
1. 건축 분야				
1.1.	구조체 안전 상태(보, 기둥, 슬래브, 벽체의 균열 및 기울임 상태여부)			
1.2.	옥상 안전상태(균열 및 탈락, 청소 및 배수 상태여부)			
1.3.	화장실 안전상태(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1.4.	계단 안전상태(난간 고정, 미끄럼방지 시설 등 상태여부)			
1.5.	마감재 안전상태(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2. 일반시설물 분야				
2.1.	일반시설 안전상태(옹벽, 담장, 석축, 절개사면, 교문, 담장 등의 균열, 기울임, 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2.2.	운동장 및 배수로 안전상태(파손, 패임, 퇴적물 등 상태여부)			
2.3.	CCTV 안전상태(파손, 고정, 작동 등 상태여부)			
3. 소방분야				
3.1.	소화 및 감지설비 안전상태(소화기, 소화전 동작, 고정, 위치 등 상태여부)			
3.2.	피난 및 방화설비 안전상태(피난구, 유도표시 및 유도등, 방화문 또는 셔터 등의 동작, 위치, 장애물 등 상태여부)			
3.3.	소방점검용역업체 점검(지적사항 조치 등) 상태여부			
3.4.	소방차 진입로 상태여부			
4. 전기분야				
4.1.	조명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4.2.	전열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 고정, 문어발식 및 개인전열기 사용 등 상태여부)			
4.3.	관리실의 안전상태(전기관련시설의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표시상태)			
4.4.	전기점검용역업체 점검(지적사항 조치 등) 상태여부			
5. 기계 분야				
5.1.	냉난방설비 안전상태(냉방 실내•외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등 상태여부)			
5.2.	급수 및 급탕설비 안전상태(펌프, 보일러, 세면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누수 등 상태여부)			
5.3.	환기설비 안전상태(환풍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등 상태여부)			
5.4.	승강기 등 안전상태(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 동작, 파손, 점검 등 상태여부)			
5.5.	관리실의 안전상태(기계실, 보일러실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표시 상태)			
5.6.	승강기 및 보일러 정기점검 상태여부			
6. 가스분야				
6.1	가스설비 안전상태(가스설비 외관부식 파손상태 및 전문점검결과)			
6.2.	관리실 안전상태(가스관련시설의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표시상태여부)			

6.3. 기타 가스설비 정기점검 상태여부			

5 소방대피훈련 평가서

실시 일자	20 년 월 일	
실시 시간	시 분 ~ 시 분	총( )분
참가 인원	교사 명/유아 명 (총 명)	총( )명
훈련내용	비상벨, 사이렌 → 각반의 대피경로로 대피 → 대피장소 집결 → 유아인원 체크 → 간단한 주의사항 → 교실로 이동	
대피훈련 실시 내용	**평가내용**	**평가란**
	1. 비상 사이렌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적합한 크기로 울렸는가?	상, 중, 하
	2. 대피 순서는 효율적인가?	상, 중, 하
	3. 대피 장소는 안전한가?	상, 중, 하
	4.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잘 이행했는가?	상, 중, 하
	5. 연락체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상, 중, 하
	6. 대피훈련 결과 문제점은 없는가?	상, 중, 하
	7. 교사는 모두 소화기를 조작할 수 있는가?	상, 중, 하
잘된 점		
문제점 및 개선점		